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26. 04.



제1장 기술료 제도의 개요	1
1. 정의	1
2. 목적	1
3. 근거	1
제2장 기술료 제도의 운영	2
1. 운영체계	2
2. 기술료의 징수	3
3. 정부납부기술료	3
4. 기술료 등의 감면	4
5. 기술료의 사용	4
제3장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	5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5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5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6
4.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6
5.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	6
6. 관련 서식	6
[부록]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7

I 기술료 제도의 개요

1.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2.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성과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3.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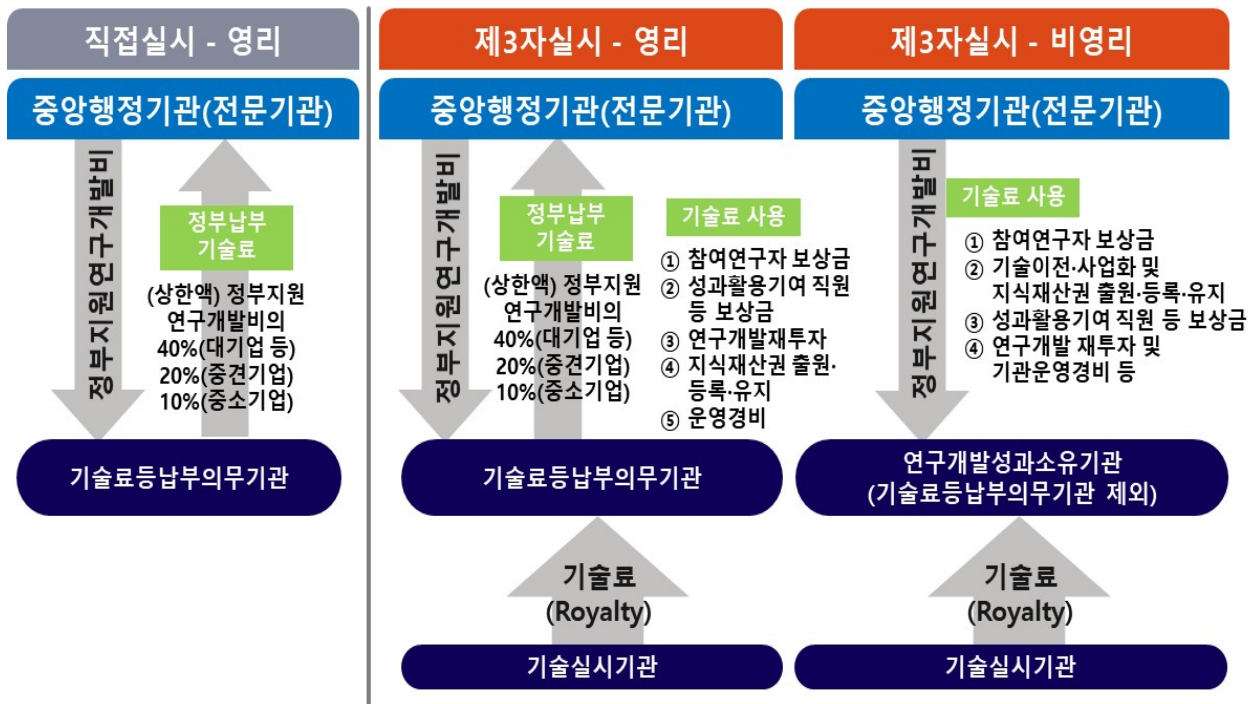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II 기술료 제도의 운영

1. 운영체제

● 기술료 제도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이 경우,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②기술료 등의 납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그림 1]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2. 기술료의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를 허락한 경우,
 -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를 제출

3. 정부납부기술료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납부토록 하고
 -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text{정부납부기술료(제3자실시)} = \text{기술료 징수액}^* \times \text{요율}^{**}$$

* 기술료 징수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

** 요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 매출액 보고는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text{정부납부기술료(직접 실시)} = \text{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times \text{기술기여도}^{**} \\ \times \text{(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times \text{요율}^{***}$$

* 수익: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 기술기여도: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요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4. 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료 징수액 또는 납부액의 감면을 함에 있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때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5. 기술료의 사용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에 사용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 다음의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정부지분 기술료의 15% 이상
 -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는 기술료가 징수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경비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
 -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
 -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나머지 금액

III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상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처가 기업 유형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적용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국가안보,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 악화 등 감면 조건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기타 감면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5.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

-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 등 부처의 재량에 따라 납부 방법 지정 가능

6. 관련 서식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등은 제공하는 공통서식을 사용하고, 기술료 감면 신청서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서식 마련 가능

[부록]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기여도를 연구개발과제협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단계에서 논의를 위한 '매출액 기준' 및 '기술기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납부 대상

-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 후 수익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 납부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9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인 '기술기여도'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 '기술기여도(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는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이 활용된 제품의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D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

정부납부기술료 =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② 기술 기여도(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 ③ 요율 (시행령)

●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예시)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기업 전체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침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A2의 매출액이 발생(신규 제품)하였거나 증가(기존 제품 개선 등)한 경우

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 단위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A2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p>• 기술 기여도 =</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p> <p>**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p>(정부지원 연구개발비*)</p> <hr style="border: 0.5px solid black;"/> <p>(총사업비**)</p>
--	---

i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제품군A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A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에서의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p>• 기술 기여도 =</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frac{\text{제품A2(예상 매출액}^*)}{\text{제품군A(예상 매출액)}} \times$	$\frac{\text{(정부지원 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p>*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p> <p>**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p> <p>***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ii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매출액에서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p>• 기술 기여도 =</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frac{\text{제품A2(예상 매출액}^*)}{\text{기업(예상 매출액)}} \times$	$\frac{\text{(정부지원 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p>*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p> <p>**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p> <p>***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2.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군C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매출액에 기여(공정 개선 활동 등)한 경우

i)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C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C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p>• 기술 기여도 =</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frac{\text{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text{제품군C(예상 매출액)}} \times$	$\frac{\text{(정부지원 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p>*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p> <p>**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p> <p>***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ii) 제품군C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p>• 기술 기여도 =</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frac{\text{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text{기업(예상 매출액)}} \times$	$\frac{\text{(정부지원 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p>*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p> <p>**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p> <p>***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p>		

● 기술기여도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협약 시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확인 가능한 수익(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기여도를 기입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 기여도					

- (예시) 기술기여도는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

① (매출액 기여율) 기술료 산정 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인한 성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시된 매출액 기준과 매출액 기여율*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사항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여율은 각 년도 또는 평균 등 협의에 의해 정함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여율 산정기준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평균
기업 (또는 제품군)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 제품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매출액 기여율(협약) (C=(B/A)×100)							

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총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되, 과제 종료 후 정산·환수 등을 반영하고 연구개발투자계획에 따른 실적 등 확인하여 재산정 및 적용 가능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산정기준	협약 시	과제 종료 후
총사업비(A)		실사용 적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B)		실사용 적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D=(B/A) \times 100$)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확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여도 (재산정하여 반영)

③ (기술기여도 협약)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수익 기준),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를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액 산정 시 반영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는 납부액 산정 시 과제 종료 후 정산·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1.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협약 시 제시된 제품 단위 또는 제품군 단위 등 매출액 기준이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는지 확인
2. (기여도 확인) 전문기관은 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기여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기여도 검증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기술료 납부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4. (검증단 구성)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26. 04.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